

발리 각료회의 이후 무역원활화협정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김민성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mskim411@kiep.go.kr, Tel: 3460-1113)

차 례 ● ● ●

1. 발리 각료회의 이후 논의 현황
2. 무역원활화협정 채택 결렬과 그 원인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13년 12월 발리 각료회의결정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의 신속한 발효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WTO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가 설치되어 무역원활화협정의 법적 검토,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및 최빈국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2014년 7월 31일 현재 34개국만이 A의무 통보를 완료하여 저조한 통보율을 보인 가운데, 인도의 반대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 채택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짐.
- 한편 7월 22일 개도국 및 최빈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에 필요한 지원 관련 신탁기금(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이 WTO에 신설됨.
- ▶ 인도가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을 반대한 이유는 무역원활화협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협정이 채택될 경우 자국의 이익과 직접 연결된 식량안보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협정 채택 거부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인도는 식량안보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여 WTO 농업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의 허용화 문제는 인도 정부의 최대 관심 사안이었음.
- 인도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 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기하고 식량안보, 개발 이슈 등 발리 패키지의 여타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전과 모든 이슈의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원칙을 주장하고 있음.
- 평소 친기업(pro-business) 성향으로 알려진 모디 총리가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2014년 5월 총선에서 선거공약으로 농민들에게 50%의 이윤을 약속하였기 때문임.
- ▶ 금번 무역원활화협정 채택 실패로 향후 DDA 협상의 모멘텀이 상실되고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손상이 우려
-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으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A의무 통보를 독려하고 구체적인 개도국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발리 각료회의 이후 논의 현황

■ 2013년 12월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정문안의 법적인 검토와 더불어 7월 31일까지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회원국 내 국내 승인절차를 거쳐 2015년 7월까지 무역원활화협정을 발효시키는 데 합의하였음.

- 한편 이를 위해 개도국은 2014년 7월 31일까지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해야 하는 A의무¹⁾를 사무국에 통보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의 신속한 발효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PCTF: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가 설립되었음.

- Esteban Conejos 필리핀 대사가 PCTF 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PCTF는 무역원활화 협정문안의 법적 검토, A의무 통보 접수,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을 위한 개정의정서 작성 등 무역원활화협정의 법적 검토 작업에 관한 임무가 주어짐.
- 더불어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메커니즘이 구제화되기 시작하였음.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법적 검토

■ 무역원활화 협정문안의 법적 검토는 WTO 사무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하여 회원국이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과거 방식과 달리 모든 회원국 각자가 협정문안의 법률 검토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취합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 5월 초에 동 검토 작업이 완료되었음.

-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차이로 합의 도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합의된 내용의 실질적 변경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문안 변경 위주로 작업이 진행됨.

1) 무역원활화협정은 무역원활화조치 관련 의무규정인 Section I과 개도국 우대와 관련된 Section II로 구분되는데, 개도국 및 최빈국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Section I에서 합의된 의무규정을 이행 시기와 지원여부에 따라 구분한 A, B, C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 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한 의무를 의미함.

■ A의무 통보의 경우 통보 시한인 7월 31일 기준으로 34개국만이 통보를 완료함.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홍콩,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멕시코, 브라질, 페루, 모리셔스 등이며 주로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 중심으로 A의무가 통보됨.
-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은 Section I의 모든 조항을 A의무로 지정하여 협정 발효 이후 즉시 이행할 것을 약속함.
- 중국은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7.6조), 싱글원도우(10.4조), 일시 반입/역내 및 역외 가공(10.9조)과 세관 협력(12조)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A의무로 지정
- 이를 제외한 기타 국가의 A의무 통보를 분석해본 결과,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1.2조), 위험관리(7.4조), 인가된 무역업자에 대한 무역원활화조치(7.7조), 특송화물(7.8조), 싱글원도우(10.4조) 등 제도의 도입 및 유지에 따른 비용이 큰 조치들이 A의무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음.

■ 한편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편입하기 위한 개정 관련 의정서 작업은 노르웨이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인도의 반대로 개정의정서 채택은 실패로 끝남.

- 인도는 식량안보, 개발 이슈 등 여타 발리 패키지의 합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 없이 무역원활화협정의 후속조치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자국이 관심 있는 식량안보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책 없이 무역원활화협정 채택만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

나. 개도국 및 최빈국 지원방안

■ 2014년 7월 22일 WTO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관련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개도국 및 최빈국의 무역원활화협상 이행에 필요한 지원 관련 신탁기금(TFAF,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을 신설함.

■ 신탁기금(TFAF)은 도로, 항만, 철도와 같은 물리적 기반시설이 아닌 통상법의 현대화 관련 컨설팅서비스, 국내 워크숍 및 관련 공무원 교육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²⁾

- 개도국 및 최빈국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특정 수요를 평가하고 지원 가능한 공여국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2) WTO(2014), "Azevêdo launches new WTO Facility to deliver support to LDCs and developing countries,"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4_e/fac_22jul14_e.htm(검색일: 2014. 7. 30).

- 무역원활화협정 관련 기술 지원의 수요와 공급을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여국과 수여국 간의 정보 흐름을 위한 기반 조성
 - 예를 들면 지원 제공자에 대한 정보 수집, 이행경험 공유 및 교육훈련자료 수집, 수혜국과 공여국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정기적 회의 운영 등
- 지원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을 도와주고,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개도국과 공여국 자금 연계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기금을 제공
 -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보조금: 잠재적인 공여국은 발굴하였으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능력이 부족할 경우 프로젝트 제안서 준비를 위한 전문가 지원을 위해 최대 미화 3만 달러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
 -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보조금: 공여국을 찾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국내 워크숍, 공무원 교육 훈련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지원에 최대 미화 20만 달러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

■ 신탁기금은 WTO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여국의 자금 제공규모에 따라 운영 성과 및 활성화 여부가 결정됨.

- 현재 노르웨이, 호주가 16개의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함.³⁾

■ 이외에도 WCO, World Bank,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무역원활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WCO는 WTO와 긴밀한 협조하에 자체적으로 무역원활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World Bank Group도 2014년 7월 17일 무역원활화 지원 프로그램에 착수함.
- World Bank Group의 무역원활화 지원 프로그램은 호주, 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약 3,000만 달러의 기금이 마련된 상태임.⁴⁾

2. 무역원활화협정 채택 결렬과 그 원인

■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이 실패로 끝난 주된 이유는 인도의 반대 때문으로, 인도가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을

3) "Praise for a New TFA Facility"(2014. 7. 23), *Washington Trade Daily*.

4)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nounce Trade Facilitation Assistance Programs"(2014. 7. 23),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반대한 이유는 무역원활화협상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임.

-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의제로, 2013년 발리 각료회의에서 인도와 미국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다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어렵게 합의문이 도출되었던 의제임.

가. WTO 농업협정과 인도의 식량안보법

■ WTO 농업협정에서는 무역을 왜곡시키는 감축보조금의 지급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특정 품목 생산액(또는 총 농업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음.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은 그것이 시장가격에 매입하고 방출하는 한 감축대상이 아니지만,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할 경우 가격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축보조가 되고 이에 따라 구매가격과 참조가격의 차이를 계산하여 감축보조금⁵⁾으로 WTO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는 인도가 자국의 기아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식량안보법에 근거한 식품보조금이 WTO 농업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인도정부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을 허용보조금으로 취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 인도는 식량안보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여 감축대상 보조금이 농업총생산액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 빈곤농민에 대한 정부의 식량구매를 감축대상보조금 계산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식량안보법은 인도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약 8억 명에게 쌀, 밀 등의 구매 시 식량보조금을 지급하고 아동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3년 8월에 발효됨.
- 동 법의 시행으로 인해 인도정부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층에 대한 식량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년 22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⁶⁾
- 또한 인도를 필두로 한 G33 국가들은 감축대상보조의 산정방식이 매우 오래된 방식으로, 현재 세계시장의 식품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인도는 감축대상보조 계산 시 고정외부참조가격으로 1986~88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식품가격의 상승으로 정부 관리가격이 항상 고정외부참조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⁷⁾

5) 감축대상보조는 (관리가격-고정외부참조가격) x 지지물량으로 계산함.

6) "Highlights of India's food security bill"(2013. 7. 23), Reuters.

7) Jatkar Archana and Chenai Mukumba(2014), "Unpacking the Bali Package A Snapshot of the Bali Ministerial Decisions of the WTO Members," Discussion Paper, CUTS International, p. 9.

글상자 1. 인도의 식량안보법

- 인도의 식량안보법은 2009년 통일진보연합(UPS) 재집권 당시 구상된 법안으로, 이후 UPS가 2014년 총선을 의식해 주요 선거 공약으로 활용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동 법은 인도의 심각한 빈곤문제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음.
- 인도는 2005~08년 평균 9%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도 전체 빈곤율은 37.2%에 달하며(2009년 기준) 기아 수준 역시 열악한 상황임.⁸⁾
-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전 세계 개도국 및 최빈국을 대상으로 글로벌기아지수(GHI, Gloabl Hunger Index)를 매년 발표하는데, 2005년 기준 인도의 글로벌기아지수는 정보수준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북한보다도 열악함.

2005년도 인도의 글로벌기아지수

	순위	영양결핍 인구비중(%)	5세 이하 저체중 아동 비중(%)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GHI ¹⁾
중국	14	13.1	4.5	2.4	6.7
스리랑카	45	27.9	21.1	1.6	16.9
북한	55	36.1	20.6	3.2	20.0
파키스탄	63	22.8	32.4	8.4	21.2
방글라데시	57	15.1	39.2	6.4	20.2
인도	69	20.9	43.5	7.5	24.0

주: 1) GHI는 영양결핍 인구비중, 5세 이하 아동의 저체중 비중,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단순 평균한 지수로, 0~100까지 척도로 0에 가까울수록 좋음.

자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UPS는 이러한 빈곤문제를 퇴치하고 국민의 영양상태 개선 및 공공보건 증진을 위해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지원제도를 종합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식량안보법을 도입함.
- 식량안보법이 2013년 8월 인도의회를 통과하여 발효됨에 따라 인도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약 8억 명이 식품보조를 받아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
- 식량안보법의 시행으로 농촌인구의 75%, 도시인구의 50%가 매월 5kg까지 쌀, 밀 등의 곡물을 1~3루피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극빈층, 임산부 및 수유모 출산수당,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 등 인도의 식량안보법은 안보보다는 국내의 빈민 및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외에도 식량안보법은 공공배급제도의 비효율성 및 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과 주정부가 대상 가구를 선별하도록함으로써 제도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은 빈민구제를 위한 인도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식량안보법에 의한 식량보조는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생산을 유인하기 때문에 WTO 농업협정문의 감축대상보조금이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WTO 농업협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인도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최소지지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으로 쌀, 밀 등을 구매하여 생산자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배급제도(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를 통해 경우에 따라 실제

8)김미수(2012. 1), 「인도, 안정적인 식량공급 시급」, Chindia Journal, p. 40. 포스코경영연구소.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수매함으로써 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해외수출로 이어져 국제 농산물 무역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⁹⁾

- 결국 인도의 요구대로 최소지지가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교역 왜곡과 더불어 식량 비축기간 동안 국제 가격을 상승시키고 식량 방출 시에는 가격을 하락시켜 다른 국가의 농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식량안보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반대국가의 논리임.

■ 결국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개도국의 저소득계층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영구적 해법을 2017년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영구적 해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식량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를 자제하는 평화조항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됨.

- 단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프로그램에 따라 구입한 재고가 무역을 왜곡시키거나 다른 회원국의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또한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보조금의 감축대상보조 한도초과 시 이에 대한 통보, 국내보조 통보, 공공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통보 및 투명성 의무가 부과됨.

나.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에 대한 인도의 입장

■ 인도는 무역원활화협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무역원활화협정이 채택될 경우 식량안보 이슈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 거부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인도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 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기하고 식량안보, 개발 이슈 등 발리 패키지의 여타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전과 모든 이슈의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원칙을 주장하고 있음.

■ 인도는 발리 패키지 이슈에 대한 행동계획, 식량안보 관련 평화조항의 모호성 등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여 결국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이 불발됨.

- 인도는 발리 패키지의 이슈에 대해 ①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에 대한 영구적 해법 도출을 위해 농업위원회 내부에 특별 세션(dedicated special session)과 같은 제도적 메커니즘을 즉시 신설 ② 12월 31일까지 영구적 해법 도출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하에 명확한 절차와 향후 일정 및 결과를 제시 ③ 다른 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한다는 데 회원국이 동의하고 ④ 10월 일반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할 것 4가지 행동계획(action plan) 제시함.¹⁰⁾

9) "WTO has a point in objecting to India's food security act"(2014. 6. 1), *Hindustan Times*.

10) "TFA-Wait and Watch Mode"(2014. 7. 28), *Washington Trade Daily*.

- 또한 인도는 평화조항이 2017년을 넘기더라도 영구적 해법이 도출될 때까지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발리 각료회의 결정은 유예기간이 4년만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관련 부분의 문구수정을 요구함.¹¹⁾
- 그러나 다수의 국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발리 각료회의결정이 바뀌거나 수정될 수 없다며 인도의 제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

■ 평소 친기업(pro-business) 성향으로 알려진 모디 총리가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식량안보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집권 초기부터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임.

- 모디 총리는 2014년 5월 총선 때 자국 농민들에게 50% 이윤(profit margin)을 보장할 수 있는 농산품의 최소지지가격 결정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운 바 있음.¹²⁾
- 실제로 2014년 7월 18~1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인도정부가 적당히 타협할 기미를 보이자 녹색연단, 지속가능전체론적 농민연대 등 19개 인도 단체들이 WTO 일반이사회를 앞둔 23일 성명을 내걸고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였음.¹³⁾
- 이들은 농업은 인도경제의 근간으로 식량안보는 공공배급제도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이 없을 경우 수십만의 저소득 농민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주장함.

■ 대다수의 국가들은 금번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의 결렬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나,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을 표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인도를 지지하는 일부 국가도 존재함.

-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인접국인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브라질과 같은 주요 개도국들도 인도의 협정채택 거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만이 인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¹⁴⁾
- 한편 54개 아프리카그룹도 도하 각료회의 결정 47항에 근거하여 DDA 협상의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을 지지하며, 무역원활화협정의 잠정 발효를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역원활화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으로 종료되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미국과 EU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결국 아프리카그룹은 무역원활화협정의 잠정 발효 주장을 철회함.

11) "WTO deal: India blames use of a comma for creating ambiguity"(2014. 8. 2), *THE Economic Times*.

12) "Modi wants 50% profit margin for farmers in MSP of agri commodities"(2014. 4. 23), *Business Standard*.

13) 「인도, 농민·빈민 위해 G20에 반기」(2014. 7. 29), 『경향신문』.

14) "WTO \$1- trillion deal fails: Nine reasons why India's veto shocked the world"(2014. 8. 1), *Reuters*.

- 남아공의 통상장관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무역원활화협정이 채택시한을 넘겼지만, 8월 WTO의 여름휴가 이후 발리 패키지의 다른 이슈들과 함께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발리 패키지의 이슈 중 개도국의 관심 사안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함.¹⁵⁾
- 발리 패키지 중 무역원활화협정만이 구속력이 있으며 개도국 및 최빈국의 관심사안인 면화, 무관세무쿼터(DFQF) 등은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으로 타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원활화협정만을 발표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불균형적인 조치이며, 향후 개도국의 관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없을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언급함.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무역원활화협상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상이었으나,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이 실패함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의 모멘텀이 상실되고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손상이 우려됨.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번 무역원활화협정이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향후 포스트 발리 작업 진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상 당시 위험관리, 싱글윈도우 등 주요 조항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A의무를 조기 통보하는 등 무역원활화의 규범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협정 채택 실패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결말임.
- 반면 이번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의 실패로 인해 다자무역체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며, 여름 휴가 이후 개도국 및 최빈국의 관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교착상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존재함.

■ 이번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이 결렬됨에 따라 ① 2014년 12월 이후 개정의정서가 채택되는 경우 ② 인도를 제외하고 의정서를 채택하는 경우 ③ 무역원활화협정의 복수간 협정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①과 관련하여 인도는 무역원활화협정이 당초 예정된 채택시한을 넘기더라도 협정 발효 시한 이내인 2014년 12월 연말까지 다른 모든 이슈들과 함께 타결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DDA 협상이 재개될 9월 중에 타협안 도출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농업보조금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각국의 양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상

15) "South African Minister Downplays Missed WTO deadline, Says Bali Deal Still Salvageable"(2014. 8. 14), *Inside U.S. Trade*.

정책이 DDA 협상에 비해 TPP, TTIP과 같은 지역무역협정과 ITA, TiSA, 환경상품 등의 복수간 협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DDA 협상 타협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②의 경우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0조(개정)에 따라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론상 회원국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의정서 채택이 가능함.
- o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인도를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도는 세계 제2의 인구 대국으로 대표적인 신흥시장국이며, 아울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의 배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¹⁶⁾
- ③의 경우 이번 무역원활화협정 채택 실패는 그동안 여러 번 지적되었던 컨센서스 방식에 의한 WTO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무역원활화협정이 WTO 다자틀이 아닌 복수간 협정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있음.¹⁷⁾

■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으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A의무 통보를 독려하고 구체적인 개도국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의무 통보 시한인 7월 31일 기준 A의무를 통보한 국가는 160개의 WTO 회원국 중 통보할 필요가 없는 선진국을 제외하더라도 34개국에 불과함.
- o 미국이 AGOA와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연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A의무 통보를 독려하는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여러 채널을 통해 A의무를 미통보한 국가에 통보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APEC, OECD, WTO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음.
- o 특히 통관 관련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선진화된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도미니카공화국, 몽골, 네팔, 탄자니아,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통관 시스템을 수출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컨설팅한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함.¹⁸⁾ KIEP

16) "WTO deal: India draws world fire for sticking to Guntur over Geneva"(2014. 8. 2), *THE Economic Times*.

17) "Trade Officials, Industry Groups Lament Failure of Trade Facilitation Agreement"(2014. 8. 1),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18) 서진교 외(2013),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연구보고서13-06, p. 171, 대외경제정책연구원.